



제30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0. .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조성 재원을 정비하는 등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연차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 정비(안 제3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 범위 이내인 2029. 12. 31.까지 존속기한 연장(5년)
- 기금의 조성 재원 정비(안 제4조)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변경
- 기타 자체 정비(안 제9조, 제21조)
 -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
 - 준용 조항 삭제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불입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재산관리과

라. 입법예고 : 2024. 8. 14. ~ 2024. 9. 3.(20일 간)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후 안21조 준용 조항 삭제로 변경 추진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신청사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금의 관리·운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기금의 조성 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변경·확대함으로써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조성·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상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인구 90만 이상의 대도시에 걸맞는 남양주시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금 목표액 : 약 2,300억원
- 5년간 매년 200억 이상 적립하되, 5년 이후 존속기한 연장 및 사업 추진과 동시에 예산 확보하여 운용·집행

*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기금 목표액 결정

** 공유재산법 시행령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상 인구 90~100만명을 기준으로 면적 산정하여 연면적 65,000㎡으로 건립 계획

【시청:21,968㎡, 시의회:6,209㎡, 주차공간:32,500㎡, 외부 임대공간(시금고 등):1,323㎡,법정의무공간(충무시설, 기록관, 어린이집 등):3,000㎡】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이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총 소요액	230,000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85,600	20,000	20,000	20,000	20,000	64,400

다. 재원조달방안: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 재정경제국 재산관리과 김진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세 출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기금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64,400,000	230,00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54,400,000	180,0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50,00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